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 1852

2020. 9. 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수 4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20. 8. 12. 전석기 의원 발의 (2020. 8. 21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로부터 현물출자 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 된 '공영주차장(도시계획시설)'의 운영(위탁포함)사업을 위해 서울주 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 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사업범위에 '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'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주택 도시공사가 소유한 주차장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정함 (안 제21조)

4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·관리·운영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공사 소유의 공영주차장(도시 계획시설)을 공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, 전석기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 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	제21조 (사업) ①
의 사업을 수행한다.	
1.~19. (생략)	1.∼19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<u>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</u>
20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	<u>21.</u>
사업	

-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'SH공사')는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공급·관리에서부터,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, 해외건설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총 20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.
- 금번 조례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'19.12.12.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되어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내동 640번지 일대 행복주택및 공영주차장(도시계획시설) 토지로서, 해당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 보고로서, 해당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에도 불구하고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9조제1항1)에 따라무상귀속(SH공사→서울시)되지 못하고 공사소유로 남게 되면서 공사가 주차장 관리·운영업무를 담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.
- SH공사의 경우 타 지방공사2)와 달리 주차장 관리·운영이 조례에

¹⁾ 제29조(공공시설 등의 귀속)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(주차장·운동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행정청"은 "공공주택사업자"로 본다.

²⁾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개발공사의 조례상 사업범위를 확인한 결과, 총 16개 지방 개발공사의 절반인 8개 공사에서 주차장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음(**붙임-3** 참고).

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해당 주차장의 관리·운영(위탁포함)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
- 조례개정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보면, 서울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로 지정되어 있던 신내동 640을 SH공사에 출자 한 후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, 도시계획시설의 경우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9조제1항³)에 따라 현물출자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SH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공간적 범위결정⁴)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음⁵).
- 그러나 2014년도 행정2부시장 방침과 달리 현물출자 시점이 건설공사 준공 이후로 추진되면서 SH공사는 2020년 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고,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, SH공사는 소유권이전이 완료 된 시점에서 공사 소유 공영주차장의 관리·운영(위탁관리 포함)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법률자문을 통해공사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.
-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의 경우(붙임-1 참고), 1필지의 토지에 임 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,

³⁾ 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 ① 행정재산은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 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.

^{4) &#}x27;공간적 범위결정'이란 도시계획시설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. (근거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1조제1호)

⁵⁾ 서울시 주택정책실(임대주택과), "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주 차장 등(도시계획시설) 공유재산 처리방안",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6호, 2014.12.23.

공영주차장은 행복주택 건축물의 지하1층(72면)과 지상1층(28면)에 분산 설치되었음.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지분매각외에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, 지분매각을 할 경우현물출자를 통한 공사 부채감축 및 임대주택의 원활한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주차장 관리·운영 경험이 없는 SH공사가 향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, 자칫 적자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신내동 640 공영주차장의 경우 SH공사는 위탁운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임.
- 확인결과 현재 SH공사(경영지원본부)는 중랑구청(산하 시설관리공단)과 위·수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, 협의 중인 위·수탁 협약(안)에 따르면 향후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금(총수입-총지출)에 대해 SH공사와 중랑구는 7:3으로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어서 수익배분 구조상적자운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<위수탁 협약서(안) 개요>

연번	주요항목	내용	조문	비고
1	위탁기간	4년간	협약서 제3조제1항	상호 이의 없을 시 자동연장
2	운 영 비	중랑구 부담	협약서 제6조제4항	공과금(전기,수도), 보험료 등
3	수익배분	SH:구=70:30	협약서 제5조제1항	운영비 제외 순수입금
4	운영방법	공영주차장	협약서 제6조제6항	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
5	주차요금	5급지 기준	협약서 제6조제2항	5분당 50원, 월주차권 5만원
6	기타	· 주차관제연동을 위한 일부 시설물 교체 필요(원 시설물은 관리사무소에 보관) · 주차장 전기요금 등 별도 산정을 위한 배전기 설치 등 협의 필요		

- 참고로, 조례가 개정될 경우 SH공사에서는 신내동 640 공영주차 장외에도 내곡공공주택지구내 주차장2부지(308면) 및 문정컬처밸

- 리 Zone4 지하1층 주차장(30면)도 개정조례를 근거로 관리·운영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음.
- 종합하면,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을 SH공사의 새로운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,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과 동시에 공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사업 다변화에도 일 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【붙임-1】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현황 (출처: SH공사)

○ 신내동 640번지 현물출자 진행경위

■ 2012.08.25. : 현물출자 방침 결정 (시장방침 제270호)

■ 2012.09.26. : 시 투자심사 (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: 적정)

■ 2013.06.26. : 사업계획승인 (서고 제2013-199호)

■ 2014.02.26. : 착공신고

■ 2014.12.23. : 주차장 등(도시계획시설) 공유재산 처리방안(행정2부시장 방침)

■ 2015.01.29. : 2015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(적정)

■ 2015.04.23. : 제259회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(원안가결)

■ 2019.07.18. :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시 공영주차장은 무상귀속

대상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고시 (서고 제2019-228호)

■ 2019.10.02. : 사용검사

■ <u>2019.12.12. : 「시유재산 현물출자 시행」</u>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방침(공공주택과

-14554호)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(재산가액 304억원)

■ 2020.01.10. : 자본금 변경등기

○ 행복주택 대상지 현황

사 업 명	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	
공사기간	2016.07.01. ~ 2019.07.09.	12
연 면 적	23,460.31m² (대지면적 5,374.50m²)	Port
규 모	지하1층/지상24층, 행복주택 2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(4,755.96m²),공영주차장(618.54m²)	
용 도	아파트 1개동 및 부설주차장(161대), 공영주차장(100대)	



○ 공영주차장 사업개요

위 치	지하 1층 ~ 지상 1층(일부)	
주차대수	100대(지상 28대 / 지하 72대)	P 의용수처럼 aura 또
면 적	2,700.58m² (대지지분 618.54m²)	

【붙임-2】 관련규정

○ 공공주택특별법

제29조(공공시설 등의 귀속)

① 공공주택사업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<u>공</u> 공시설(**주차장·운동장은 제외한다**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 한다. 이 경우 "행정청"은 "공공주택사업자"로 본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

① <u>행정재산은</u>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<u>출자의 목적으로</u> <u>하지 못하며</u>,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1조 (사업)

-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5. 1. 2., 2015. 10. 8., 2017. 3. 23., 2017. 9. 21.>
 - 1. 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
 - 2.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
 - 3.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, 개량,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 시설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
 - 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 - 5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 - 6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 -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
 - 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 - 9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 - 10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 - 11.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- 12. 주거복지사업

- 13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, 운영 및 관리
- 1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
- 15.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
- 1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7.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
- 18.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
- 19.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
- 20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
○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19조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.

- 1.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 및 공급·임대관리
- 2.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·개량·공급·임대 및 관리
- 3.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[신설 2011. 11. 8.]
- 4. 관광지·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

5. 도로·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

- 6. 해외무역, 외자유치,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<개정 2009. 12. 31.>
- 7.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
- 8.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
-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
- 10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
- 11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
- 12.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. 다만, 비투자사업에 한한다. [신설 2016. 07. 19.]
- 13.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[전문개정 2020. 07. 15.]

○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1조 (사업)

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4-01-09><개정 2015-09-30>

- 1.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, 건설, 개발, 분양, 설계, 감리, 임대 및 관리사업 <개 정 2011-11-17>
- 2. 토지의 취득. 개발. 분양. 임대 및 관리사업
- 3. 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
- 4. 관광·리조트 등 관광지,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<개정 2011-11-17>
- 5. 공유수면 매립사업
- 6.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
- 7. 유통·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

8.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

- 9.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
- 10. 「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<신설 2009-07-27>
- 11. <삭제 2015-09-30>
- 12. <삭제 2015-09-30>
- 13. <삭제 2015-09-30>
- 14. 관광숙박업 <신설 2011-11-17>
- 15.<삭제 2015-09-30>
- 16. <삭제 2015-09-30>
- 17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[제10호에서 이동 2009-07-27] <개정 2010-01-18> [제11호에서 이동 2011-11-17]

18.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

[제11호에서 이동 2009-07-27] [제12호에서 이동 2011-11-17]

19. 그 밖에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 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<개정 2005-07-25> <개정 2009-7-27> <개정 2010-1-18>

[제13호에서 이동 2011-11-17] <개정 2017-09-25>

【붙임-3】광역 지자체 산하 지방개발공사의 조례 사업범위 비교

연번	공사명	반영여부	조례 사업범위(주차장)
1	강원도개발공사	Х	
2	경기주택도시공사	0	제19조(사업) 제5호 5. 도로·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(※정관에 주차장 명시)
3	경남개발공사	0	제20조(사업) 제1항제10호 10. 주차장 사업
4	경상북도개발공사	X	
5	광주광역시도시공사	0	제24조(사업) 제13호 13.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 (공영유료주차장 포함)
6	대구도시공사	0	제7조(사업) 제1항제7호 7. 주차장의 건설·운영사업
7	대전도시공사	0	제2조(사업) 제9호 9. 주차장 사업
8	부산도시공사	X	
9	서울주택도시공사	X	
10	울산광역시도시공사	X	
11	인천도시공사	0	제21조(사업) 제1항제8호 8.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
12	전남개발공사	X	
13	전북개발공사	0	제20조(사업) 제1항제13호 13. 주차장 사업
14	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	X	
15	충북개발공사	0	제6조(사업) 제1항제9호 9.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
16	충청남도개발공사	X	